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중 “응시원서”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로,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성적으”를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적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제1조의6 중 “밋”을 “또는”으로, “해당 시험의”를 “각각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험”을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응시원서”를 “각 응시원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제1차 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을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적부터 적용한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구 분	시험의 내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352점 이상 —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 의 65점 이상	Level 2 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375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 응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세무사 시험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u>응시원서</u>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u>2년이 되는 날</u>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u>성적으로</u>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 (생략)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차 시험 응시원서</u> ----- 5 <u>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u> ----- ----- ----- ----- ----- <u>성적으로</u> <u>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u> <u>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적이 확</u> <u>인되는 경우</u> ---. ④ (현행과 같음)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u>해당 시험의</u>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 -- <u>또는</u> ----- ---- <u>각각 해당 시험의 제1차</u> <u>시험 응시원서</u> 접수 마감일 <u>또</u> <u>는 제2차 시험</u> -----.
제5조(응시원서) <u>시험</u>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u>응시원서</u>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원서) <u>제1차 시험</u> 및 <u>제2차 시험</u> ----- ----- <u>각 응시원서</u> ----- --.

제6조(수수료)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제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시험 -----

5. -----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152